

# 개인/사물/기반 위치정보사업 등록/신고 의무사항 비교



# 위치정보사업별 등록/신고 의무사항 비교



## 목 차

---

1. 처음 등록/신고 및 변경 시
2. 양도/양수/상속/합병/분할 시
3. 휴업/폐업 시



# 1. 처음 등록/신고 및 변경 시

## 처음 등록/신고 기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법인	등록 가능	신고 가능	
개인	등록 불가능		

## 변경 등록/신고 기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상호	사전 신고	사전 신고 (방통위 신고 증빙 회신 必)	사전 신고 (방통위 신고 증빙 회신 必)
소재지			
시스템			





## 2-1. 양도, 양수, 상속 시

### 양도, 양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인가/신고	사전 <b>인가</b>	사후 신고	
신고 대상	양수 받는 사업자		

### 상속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인가/신고	해당없음	사후 신고	
신고 대상		상속 받는 사업자	



## 2-2. 합병, 분할 시

### 합병, 분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인가/신고

사전 **인가**

사후 신고

신고 대상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 분할 **전/후**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가지게 되는 **주체**가 **인가/신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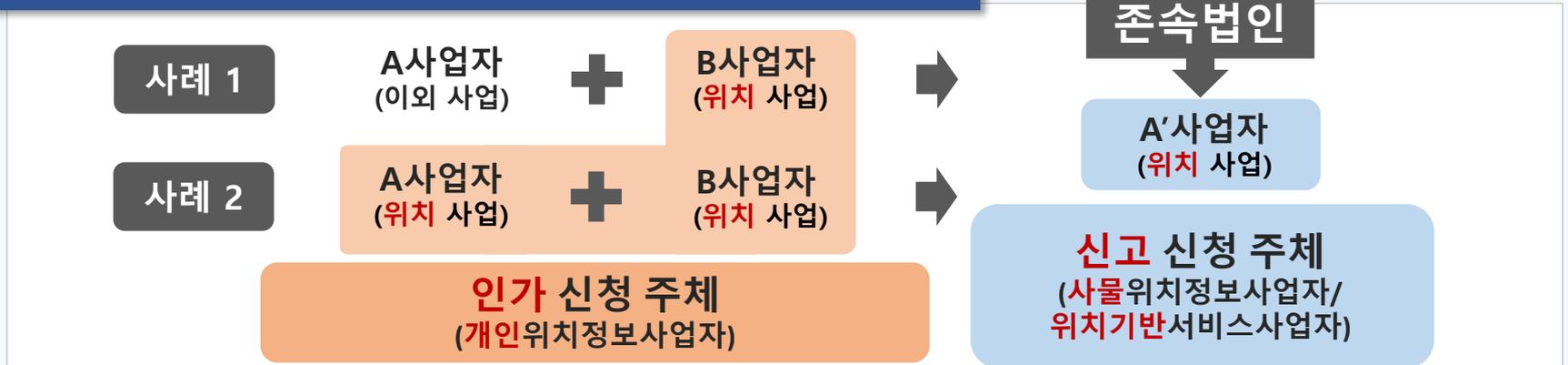


## 2-3. 합병 예시

### 신설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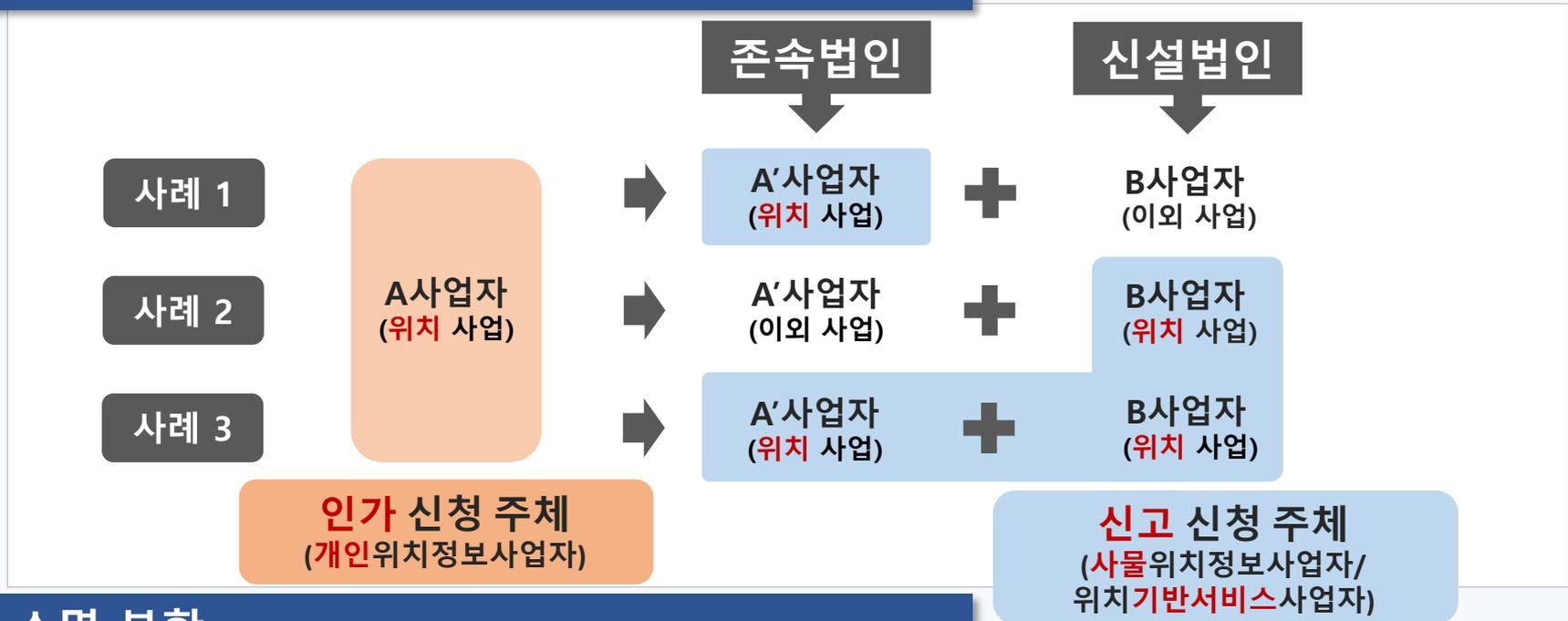
### 흡수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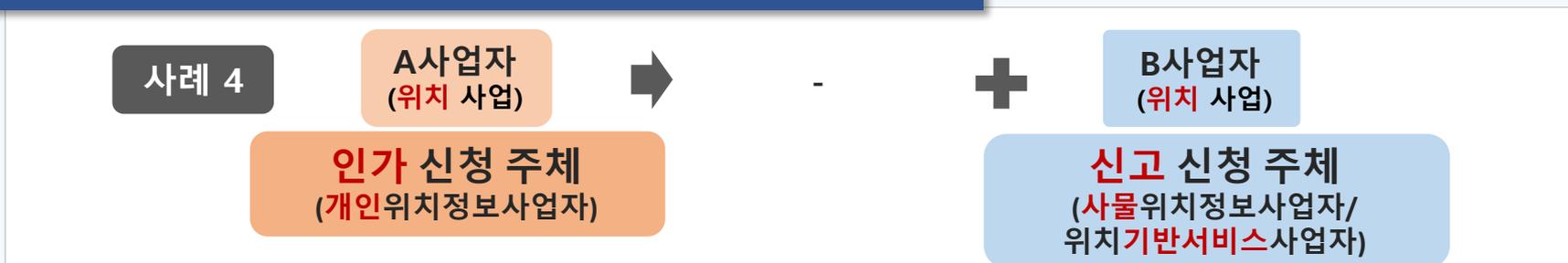


## 2-4. 분할 예시

### 존속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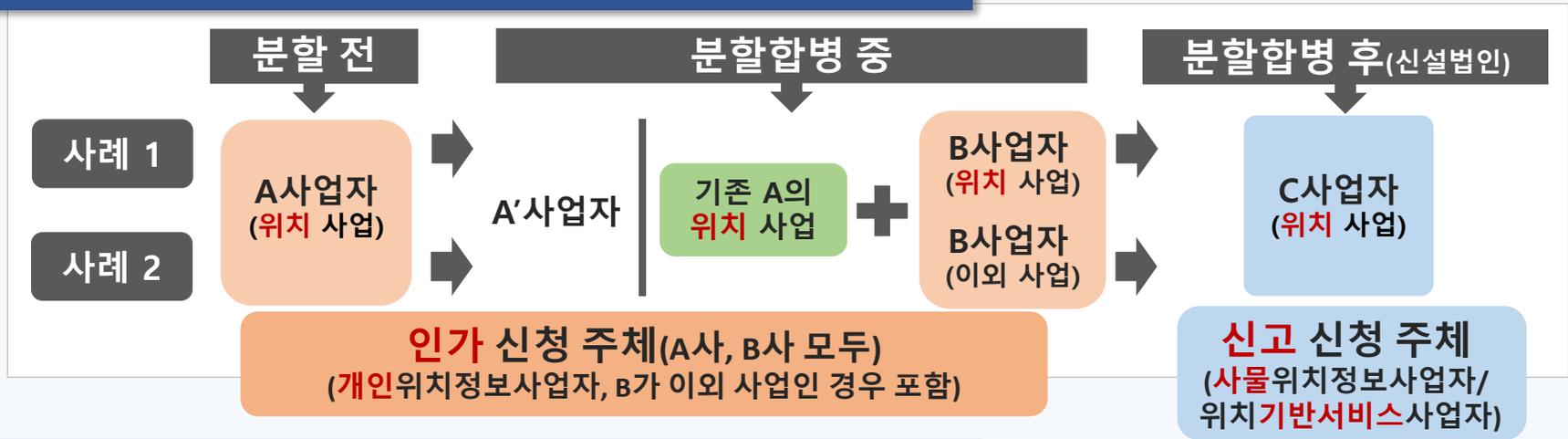
### 소멸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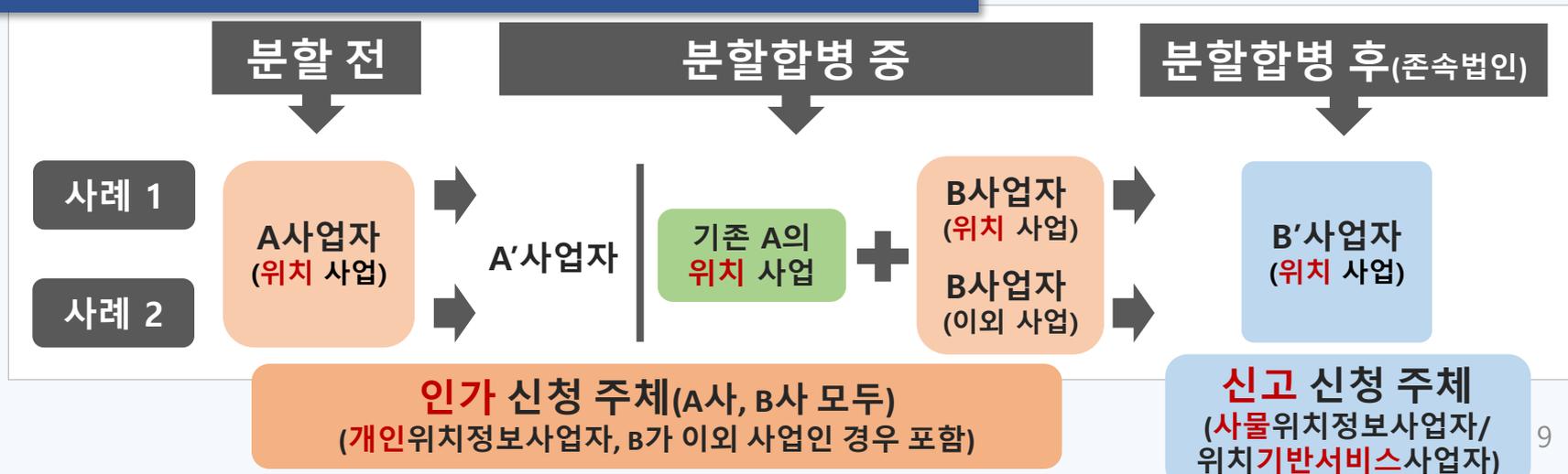


## 2-5. 분할합병 예시

### 신설 분할합병



### 흡수 분할합병





# 3-1. 휴업, 폐업 시

## 휴업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승인/신고

사전 **승인**

사전 신고

통보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최소 30일 전 휴업하는 사업범위/기간 통보

해당없음

파기의무

개인위치정보  
(일부 휴업인 경우 휴업사업의 정보만 파기)

해당없음

기간

최대 1년



## 3-2. 휴업, 폐업 시

### 폐업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승인/신고

사전 **승인**

사전 신고

통보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최소 30일 전  
폐업하는 사업범위/기간 통보

해당없음

파기의무

- ① 개인위치정보
- ②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 ① 개인위치정보
- ②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해당없음



# 참고사항

- 실태점검 자료 제출 시 **방통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해야함
-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등록/신청 후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할 것
- 승인/신고 → 확인 → 수리까지 업무일 기준 **약 10~20일** 정도 소요

## [ 방통위 공문 예시 ]

## [ 방통위 접수증 예시 ]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부)폐업신고 접수

1. 관련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나. 지방세법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2. 귀 사가 신고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부폐업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자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유형	신고번호
	120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사업장 소재지 :  
나. 접수일자 : 2022.

3. 위치정보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등록면허세 부과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

주무관 인터넷이용자 정책과 과장

협조자

시행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접수

우 13809 경기도 파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 www.kcc.go.kr

전화번호 02-2110-1528 팩스번호 02-2110-0140 / smgang@korea.kr / 비공개(7)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접수증**

신청번호		신청일시	
접수번호	2	접수일시	
민원사무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폐업 신고	처리기한	
민원수령방법	수령물없음		
신청인			
대리인			
납부방법	없음	납부여부	수수료없음
민원수수료	0원	신청건수	1건
부가수수료	0원	기타수수료	0원
우송료	0원	수수료총액	0원
안내사항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처리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민원접수자 :  
전화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합니다**